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53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제6조제2항중 “위원장을 포함하여”를 삭제
-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내용적용 자구 수정
(제10조제3호, 제4호)

첨 부

-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항중 “위원장을 포함하여”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3호중 “제80조제2항의”를 “제80조제1항 본문”로 하고, 동조

제4호중 “제79조제2항”을 “제79조제2항 본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) ①(생략)</p> <p>②회의는 <u>위원장을 포함하여</u>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회의는 <u>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</u>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제10조(심의범위)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. 다만,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.</p> <p>1 - 2(생략)</p> <p>3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.</p> <p>4.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, 제85조제5항,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,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.</p>	<p>제10조(심의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 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 제80조제1항 본문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4. -----</p> <p>----- 제79조제2항 본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